

의안번호	2210141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5.5.16.
추계번호	24D2568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설립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공사의 사장,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 각 1명,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명, 금융산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등 위원 9명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12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5조(이사회)	공사에 이사회를 두며(제1항),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함	의무규정
7	안 제23조(금융투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	공사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며(제1항), 심의위원회는 공사 임직원 1명,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등 위원 5명으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27조(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둠	의무규정
9	안 제2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함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5항, 제429조의2,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4. 제3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5. 제30조에 따른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7.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10	안 제33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제2항) 1.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 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소송 및 법률 자문비용 등의 지원 3. 투자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예방 교육, 캠페인 및 홍보 사업 4.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또는 활동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설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3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4	안 제12조(임원)	
5	안 제15조(이사회)	
6	안 제16조(직원의 임면)	
7	안 제23조(금융투자피해 보상심의위원회)	
8	안 제27조(금융투자피해 보상기금의 설치)	
9	안 제28조(기금의 조성)	
10	안 제33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2. 상세 사유

□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의 설립·운영(안 제3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5조·제16조 및 안 제21조)

- 제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전문기관으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설립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라 공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공사 임직원의 인건비, 공사와 소속 기구(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운영비, 고유업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 등 안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되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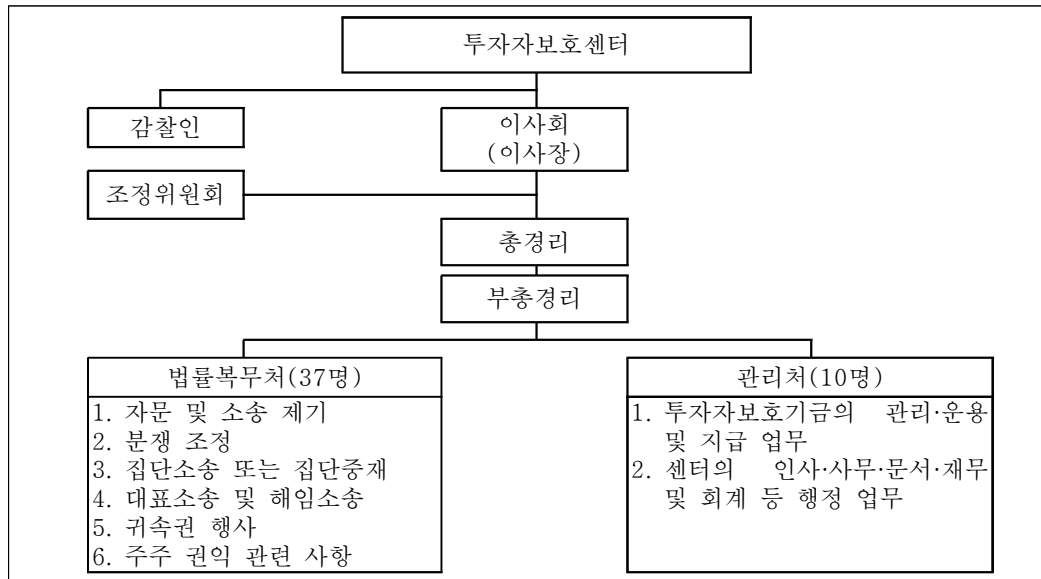
- 제정안에 따라 공사의 회계로 경리(經理)하여야 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사업범위, 임직원의 직급별 인원과 급여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 국내에는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페어펀드(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 Fair Fund)를 관리·운용한 사례는 없음
- 관련 외국의 사례로는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관리자(fund administrator)와 대만의 투자자보호센터(Securities and Futures Investors Protection Center)를 들 수 있으나, 이들 조직은 제정안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공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미국의 경우 사안별로 페어펀드가 설립되며, 그 분배계획이 승인되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페어펀드 관리자를 임명하여 손실 비율에 따라 피해 투자자에게 분배함. 잔액은 국고에 귀속하고 분배절차가 종료되며¹⁾, 상시적 기금 관리·운용 조직이 아님
 - － 대만의 투자자보호센터(Securities and Futures Investors Protection Center, SFIPC)는 대만 「증권투자인 및 선물거래인 보호법」(이하 “투자자보호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상시적인 투자자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사장, 총경리, 부총경리를 제외한 센터의 직원은 47명이며, 이 중 법률복무처에 37명, 관리처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음²⁾
 - 보호기금(Protection Fund)의 관리·운용³⁾ 외 대표적인 업무로는 ① 분쟁 해결의 상담창구로서의 역할, ②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제22조), ③ 증권집단 소송(제28조), ④ 대표소송 및 이사해임소송(제10-1조)을 수행하고 있음⁴⁾

1) 박준선, “미국의 페어펀드(Fair Fund) 분배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상사법연구』 43(2), (한국상사법연구회, 2024.8.), p.116-117.

2) 대만 투자자보호센터, 「2023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p.14.

3) 보호기금(Protection Fund)은 증권회사의 중개업무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된 기여금, 각 선물회사의 전월 거래 계약 건수에 기반하여 지정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기여금, 대만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등에서 각 기관의 월간 수수료 수입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며(대만 투자자보호법 제18조), 기금의 주요 용도 중 하나로 증권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채무불이행에 이른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됨(대만 투자자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

[그림 1] 대만 투자자보호센터 조직도



자료: 대만 투자자보호센터(SFIPC) 「2023 연차보고서」 (p.1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따라서 제정안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사의 규모·구체적 사업범위·인적구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비용추계에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사례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공사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의 설치·운영(안 제27조·제28조, 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제정안은 정부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출연금, 공시의무 위반·불공정거래·위법한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 벌금 수납액, 채권조달자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른 기금의 지출(지원금 지급)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사실의 입증 여부, 피해 투자자 인원, 투자자별 손해액 규모, 지원금 지급의 기준, 시장감시 기능 강화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4) 고일훈,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공적기관의 설계와 역할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59,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12.), p.26-29.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손해의 입증 여부, 손해의 구체적인 규모는 개별투자자가 위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함
- 따라서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공정배상기금의 지출(지원금 지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